

「2025 대한민국 ICT 대상」 수여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계획을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

1 개요

-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ICT 우수기업(중소·중견·벤처) 등을 발굴
- 표창 수여를 통해 ICT기업과 산업의 범국가적 인지도 향상 및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고취

2 수여 규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10점(단체9점, 개인1점), 특별상* 5점

훈격		디지털 기술	디지털 확산	디지털 인재	디지털 공헌	계
장관표창	단체	3	2	2	2	9
	개인	1				1
특별상(단체)		2	1	1	1	5

* 수여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동아일보, 전자신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③ 추천 대상

○ ICT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 등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단체)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중소기업

※ (개인)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ICT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분야	신청대상 및 자격
디지털 기술	○(혁신기술) 미래 신기술 개발 및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산업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ICT 기업 및 유공자
디지털 확산	○(해외수출) 해외수출 및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판로 확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기업 및 유공자
디지털 인재	○(일 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역량 개발 및 근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ICT 기업 및 유공자
디지털 공헌	○(사회공헌) ICT 기술로 사회문제(보건·안전·환경 등) 해결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ICT 기업 및 유공자

* 단체는 위의 4개 분야 중 택1, 개인은 분야 구분 없음

④ 추천제한 확인 및 심사

○ 접수자에 대한 추천제한* 확인

구분	기준 및 방법(예시)
공적기간	· (단체) 해당분야 2년 이상 활동/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 (개인)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적사실	· 제출 공적 사실관계 확인/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제출 : 부적격
추천 제한*	·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인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확인/고용노동부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 조회/공정거래위원회 · 임금체불 명단 확인/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준용

○ 재무심사(20점)+서류심사(80점) 합산 ※ (개인) 서류심사만 진행

구분	위원	점수	심사기준	
단체	재무심사	회계사	20점	①안정성 ②수익성 ③성장성 ④투자
	서류심사	ICT 전문가	80점	①독창성 ②우수성 ③기여도
개인	서류심사	ICT 전문가	100점	①공적기간 ②업적도 ③기여도

5 추진일정

① 공고 및 접수 (~9월)	② 심사 (~11월)	③ 시상 (12월)	④ 수상기업 홍보 (12월)
▶ 공고 안내 및 접수 -공고 게시 -제출서류 접수	▶ 추천제한 확인 ▶ 심사위원회 개최 -재무, 서류심사	▶ 수여대상 선정 ▶ 시상식 개최	▶ 수상기업 홍보지원 -수상현판 등 제작 -홍보영상 제작/송출 -수상결과 언론홍보 등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단체 [붙임3]	- 신청요약서	서식1
	- 공적조서	서식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공적증빙서류	자유양식
	- 사업자등록증, '23, '24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사본)	-
개인 [붙임4]	- 신청요약서	서식1
	- 공적조서	서식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공적증빙서류	자유양식
	- 인사기록카드*	-

*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 확인 자료)

7 행정사항 안내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9월 12일(금)**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ictbest@kfict.or.kr)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과 날인한 스캔파일(PDF) 모두 송부
 - 파일명은 '(단체명/성명)1. 제출서류명'로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시 개별 통보
- 문의처 : ICT대연합 대외협력본부(ictbest@kfict.or.kr, 02-2132-2106)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표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적이 거짓인 경우에는 표창 취소 및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훈·포장 등 각종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히 첨부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공적은 인정 불가

- [붙임] 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2. 제한사항 조회방법.
3. 장관표창 신청서류(단체).
4. 장관표창 신청서류(개인). 끝.

① 자격기준

< 단체 >

-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으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기업집단은 제외(소속회사 포함)

< 개인 >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임원 및 직원

② 추천제한

< 단체 >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동일한 유공이 아니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

< 개인 >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공통 >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아래의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신청제한 및 제외대상

- '25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3,301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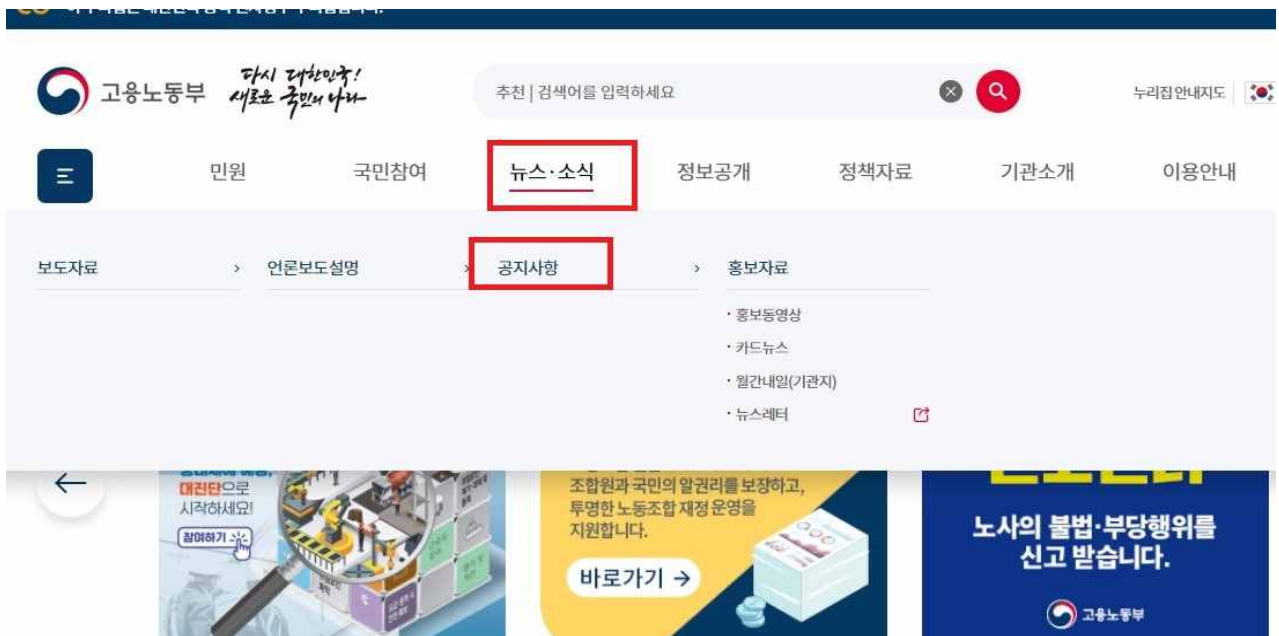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조회 안내(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체 | 공고 | 행사 | 입찰 | 인사 | 포상대상자공개 | 기타

전체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총 게시물 : 11건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
11	[공고]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3.12.29	2706
10	[공고]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3.02.07	6392
9	[공고] 2021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1.12.29	10121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누리집안내지도 | 국가상징 알아보기 | 어린이 | 화면크기 | Language

공정거래위원회

소식·뉴스 | 정책·제도 | 정보공개 | **심결·법령** | 민원·참여 | 해외경쟁정책 | 기관소개

위원회소관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바로가기 >

의결서·재결서	·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 약관법	· 표시광고법
심사관전결경고서	· 할부거래법	·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대규모유통업법
심의속기록	· 가맹사업법	· 대리점법	· 소비자기본법	· 생협법
법위반사실조회	· 제조물책임법	· 기타		
법위반조회발급				

-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관련법령 | 서식관련 | 자주물어보는질문

법위반사실조회

검색어: 전체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10

번호	연도	피심인명	조치유형
데이터 없음			

< >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l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누리집 안내지도 | 국가상징 알아보기 | 화면크기 | Language

 고용노동부 Q 통합검색

민원 | 국민참여 | 뉴스·소식 | **정보공개** | 정책소개 | 기관소개 | 이용안내

- 사전정보 공표목록
- 행정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공공데이터개방
- 청렴정책공개
- 예산·법령정보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정보공개 기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②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022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2.10.27.~2025.10.26.
- * 2023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3.07.13.~2026.07.12.
- * 2023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1.04.~2027.01.03.
- * 2024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6.16.~2027.06.15.
- * 2024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12.30.~2027.12.29.

* 체불액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가나다순 고액순 전체 10개씩

전체 지역-전 업종-전체 **검색**

장관표창 신청서류
(단체)

[제출 서류 목록]

- ① 신청요약서 [서식1]
- ② 공적조서 [서식2]
- ③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④ 공적증빙서류
- ⑤ 사업자등록증, '23, '24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해당 부분만 스캔하여 제출)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장관표창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1】

신청요약서(단체)

□ 기본정보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000000	000	000000	0000.00.00
주소	(단체의 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010-0000-0000	담당자 이메일	00000@000

□ 인증 및 특허 보유현황 : 00건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유효한 사항만 기재

□ 수상이력

※ 단체명의로 받은 사항 중 장관표창 이상 기재

기서훈	세부내용
장관표창 (‘00.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정보통신 유공)

□ 추천제한 조회결과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물의야기
중대재해 (제2024-004호) 혹은 해당사항 없음	고발/과징금/ 혹은 해당사항 없음	명단공개 혹은 해당사항 없음	언론보도(24.0.0) 혹은 해당사항 없음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단체명의로 받은 사항만 기재
. . .	
. . .	
공 적 내 용	
<p>-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 작성</p> <p>- 공적내용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 필수(별도 파일로 제출) (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한하며 사진/이미지/신문기사 등 형식 제한 없음)</p> <p>- 아래 양식은 변경이 불가하며 항목 추가만 가능함</p> <p><input type="checkbox"/> 일반현황</p> <p>○ 조직구성</p> <p>-</p> <p>○ 재무현황</p> <p>-</p> <p><input type="checkbox"/> 목표 및 비전</p> <p>○ 비즈니스 모델</p> <p>-</p> <p>○ 향후 투자계획</p> <p>-</p> <p><input type="checkbox"/> 주요성과</p> <p>○ 사업수행실적 및 성과</p> <p>-</p> <p>○ 매출 및 수출 신장도</p> <p>-</p> <p>○ 국가경제 발전 및 ICT 산업 생태계 기여도</p> <p>-</p>	

【서식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장관표창 후보자

성명(단체명)			
소속(주소)		직위(급)	(공란)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단체명)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장관표창 신청서류
(개인)

[제출 서류 목록]

- ① 신청요약서 [서식1]
- ② 공적조서 [서식2]
- ③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④ 공적증빙서류
- ⑤ 인사기록카드*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하되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 확인 자료 제출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장관표창이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서식1】

신청요약서(개인)

□ 기본사항

성명	소속	직급	임원 여부	생년월일
000	00000000	00	0 / X	00.00.00
주소	(주민등록지 기준)			
연락처	010-0000-0000	이메일	00000@000	

□ 공적기간 : 00년 0월 ※ '25년 8월 5일 기준으로 작성

□ 수상이력 ※ 개인명의로 받은 사항 중 장관표창 이상 기재

기서훈	세부내용
장관표창('00.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정보통신 유공)

□ 추천제한 조회결과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징계 (연도·종류, 사면)	물의야기
중대재해 (제2023-004호)/ 해당사항 없음	고발1/과징금1/ 해당사항 없음	명단공개/ 해당사항 없음	'00 견책(사면)/ 해당사항 없음	언론보도(23.0.0)/ 해당사항 없음

* 소속 기관명으로 조회

【서식2】

공 적 조 서					
성 명	000		(한 자)	000	
생년월일	0000.00.00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 개인 주소지				
직 업	000		소 속	000	
직 위	000	직급	000	대외직명	000
추천 훈격	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ICT 산업발전 유공		공적 기간	0년 0개월 (‘25년 8월 5일 기준으로 작성)	
공적요지(70자 내외) ※ 공백제외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6하 원칙에 따라 실적위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작성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예시 - 2000.01.~2000.12.까지 □□공사의 시공책임자(담당자)로 근무하며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공기를 단축(○년○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조사자: (일반국민)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 ※ 추천관: (일반국민)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					
조 사 자					
소 속	000000		직 위	000000	
직급 또는 계급	000000		성 명	000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000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개인명으로 받은 사항만 기재
. . .	
. . .	

공 적 내 용

-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 작성
- 공적내용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 필수(별도 파일로 제출)**
(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한하며 사진/이미지/신문기사 등 형식 제한 없음)

-

-

-

-

-

-

-

-

-

-

-

-

【서식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장관표창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